

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

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,

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2.1.11.공포, 2022.7.12.시행)되었습니다.

개정된 내용에 따르면,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, 점검·유지보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바,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이를 위해,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·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안전시설을 늘려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